

【일련번호 : 1】

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경 고 · 시 정 요 구

【제 목】 휴직자, 신규임용자 등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

【소 관 기 관】 ○○소방서(△△△△과)

【조 치 기 관】 ○○소방서

【내 용】

1. 현황(업무개요)

- ○○소방서 △△△△과에서는 2015. 5월부터 2018. 3월까지 휴직자 · 신규임용자 등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을 불임의 업무현황과 같이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.
- 업무 현황(별첨)

2. 관계법령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(이하“복무규정”)」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은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3조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에 따라 정한 연가일수 만큼 연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, 「복무규정」 제7조의 4항에 의하면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
- 행정자치부 예규인 「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*」에 따르면 휴직자의 경우 휴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한 후 실시하여야 하고, 연가보상비 산정시 실제 근무하지 않은 1개월 이상 교육·파견기간·징계기간·연도중 임용시 미근무기간 등은 연가보상비 지급제외기간*으로 하여 연가보상비 산출시 그 기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***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**

- 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방법 : 휴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(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 제17조)한 후 지급한다.
- 휴직자 연가일수 = 해당연도 연가일수 - (해당연도 휴직기간(개월)/12(개월)) × 해당연도 연가일수

* 연가보상일수 = 미사용연가일수 × (12개월 - 제외기간(월)) / 12개월

3. 위법부당사항

- 그런데도 ○○소방서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소속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실태를 확인한 결과 휴직기간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와 연도중 임용자의 미근무기간과 기타 조퇴·지참 등 제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불임과 같이 총 15명에게 연가보상비 4,499,58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.

조치할 사항

- ① 휴직자·신규임용자 등 연가보상비 지급시 관련규정 검토를 소홀히 하여 부적정하게 지급한 실무책임자 현 ○○소방서 지방소방경 ♥♥♥♥, 실무담당자 ○○소방서 지방소방교 ●●●에게 「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에 따라 『**경고**』 조치하시고,(경고)
- ② 총 15명에게 과다지급된 연가보상비 4,499,580원은 환수 등 **시정조치**하고 향후 업무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연찬과 담당공무원에 대한 지도·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시정, 주의)

【일련번호 : 2】

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주 의 요 구

【제 목】 신규 소방장비 관리대장 미등록 및 관리 소홀

【소 관 기 관】 ○○소방서(♣♣♣♣단)

【조 치 기 관】 ○○소방서

【내 용】

1. 현황(업무개요)

○ ○○소방서 ♣♣♣♣단에서는 2015. 5월부터 2018. 3월까지 신규 소방장비를 관리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장비의 등록 및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.

【초계119안전센터 소방장비 미등록 현황】

연번	장비명	배부		대장등록		비고 (미등록 수량)
		배부일	수량	등록일	수량	
계	10종		37		24	13
1	8자 하강기	2015.07.01	2		2	
2	다목적 칼	2015.07.02	10		1	9(분실)
3	헬멧랜턴	2015.12.08	9	2017.06.21	9	
4	수중펌프	2015.12.08	1		1	
5	방수압측정기	2016.10.04	2		2	
6	화학보호복	2016.12.26	1		1	
7	벌쏘임 방지복	2017.07.14	4		3	1
8	휴대용 무전기	2017.12.22	3		1	2
9	탐조등	2017.12.22	4	2017.12.26	3	1
10	열화상 카메라	2018.01.28	1		1	

2. 관계법령

○ 「소방장비 관리 규칙」 제19조(소방장비의 관리기록) 및 제25조(소방장비 통합 관리시스템의 구축)의 장비운용자 및 장비관리공무원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현황을 소방장비관리대장에 등록하고, 소방장비별로 관리 및 운용사항을 기록·유

지하여야 하는 서류에 각각 기록하여야 하며, 또한, 소방기관의 장은 구축된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소방장비 정보의 입력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3. 위법부당사항

- 그런데도 ○○소방서 ♣♣♣♣단에서 각종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구매하여 119안전센터에 2015년 7월부터 2018년 감사일 현재까지 총 10종의 37점을 소방장비를 배부하였으나 6종 24점만 소방장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으며, 나머지 벌쏘임 방지복 4점 중 1점, 휴대용 무전기 3점 중 2점, 탐조등 4점 중 1점만 시스템에 등록하고, 다목적칼은 10점 중 1점만 입력하고 나머지 9점은 분실하는 등 총 4종 13점의 신규 소방장비의 장비관리시스템 등록 및 장비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.

조치할 사항

- ① 신규 소방장비 시스템 등록 및 장비 관리를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인 ○○소방서 ♣♣♣♣단 구조구급담당 지방소방경 ○○○○, 실무담당자 지방소방위 ■■■■, 감독 책임자 119안전센터장 지방소방위 ■■■■은 「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에 따라 “주의” 조치하시기 바라며,(주의)
- ② 앞으로 유사시 원활한 소방장비 사용을 위하여 장비 등록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연찬과 담당공무원에 대한 지도·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주의)

【일련번호 : 3】

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경 고 · 주 의 요 구

【제 목】 미이송 구급환자 「구급거절·거부 확인서」 작성 소홀

【소 관 기 관】 ○○소방서(♣♣♣♣단)

【조 치 기 관】 ○○소방서

【내 용】

1. 현황(업무개요)

- ○○소방서 ♣♣♣♣단에서는 2015. 5월부터 2018. 3월까지 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환자를 이송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다.

2. 관계법령

-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(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(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)」에 구급대원은 응급환자를 이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급 거절·거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송을 거부한 응급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하고,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이를 목격한 사람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구급 거절·거부 확인서에 목격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한 후 목격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하며, 또한, 구급 거절·거부 확인서를 작성한 구급대원은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3. 위법부당사항

- ○○소방서 ○○119안전센터·●●·◇◇·㉠㉠지역대 구급대에서는 2015년 5월부터 2018년 감사일 현재까지 총 11건의 소속 구급대원 5명은 구급환자를 접수하여 현장응급처치, 병원이송 거부 등으로 환자를 미이송하게 되면 환자, 보호자 및 목격자 등에 구급 거절·거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아 보고·보관하여야 함에도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.

조치할 사항

- ① 구급활동 중 환자를 병원 이송거부 및 거절하고도 「구급 거절·거부 확인서」를 미작성한 ○○소방서 ○○119안전센터 지방소방교 ♣♣♣, ◇◇·㉠㉠119지역대 지방소방사 ♥♥♥, ●●119지역대 지방소방사 §§§에게 「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에 따라 『**경고**』 조치하며,(경고)
- ②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구급대원 및 직원에 대한 교육과 지도·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주의)

【일련번호 : 4】

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경 고 · 주 의 요 구

【제 목】 신축건축물 소방활동 자료조사 지연 및 미실시

【소 관 기 관】 ○○소방서(♣♣♣♣단)

【조 치 기 관】 ○○소방서

【내 용】

1. 현황(업무개요)

- ○○소방서 ♣♣♣♣단에서는 2015. 5월부터 2018. 3월까지 소방활동자료조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자료조사를 지연 실시하였다.

2. 관계법령

- 「소방공무원 근무규칙」 제32조(소방활동 자료조사)에 따르면 외근부서의 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자료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- 또한, 「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」 제8조에서는 신축 건축물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는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14조에 따라 소방시설의 완공검사를 받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3. 위법부당사항

- 그런데도 ○○소방서 ♣♣♣♣단에서는 2015년 5월부터 2018년 3월 현재까지 사용승인된 총 28개소에 대한 신축건축물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교부사항을 관할119안전센터에 소방활동 자료조사 및 소방민원정보시스템 입력을 알렸으나,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 감사일 현재까지 총 8개소(○○ 7, 초계 1)의 신축건축물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지연(6개소) 및 미실시(2개소)하였으며,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 자료조사서 미입력 등 소방활동 자료조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.

조치할 사항

- ① 신축건축물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소홀히 한 ○○소방서 ♣♣♣♣단 지휘조사담당 지방소방경 ㉠㉠㉠, 지휘조사담당 지방소방경 ㉡㉡㉡, 지휘조사담당 지방소방경 ㉢㉢㉢, 지휘조사담당 지방소방경 \$\$\$, 실무담당자 ○○소방서 ♣♣♣♣단 지방소방위 △△△, 지방소방장 ♥♥♥, 지방소방위 ☆☆☆, 지방소방위 ◆◆◆, ▽▽▽, 감독 책임자 ○○소방서 ○○119안전센터장 지방소방경 ∞∞∞, 지방소방경 ㉣㉣㉣에게 「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에 따라 『**경고**』 조치하시고,(경고)
- ② 소방활동 자료조사 미실시 대상에 대하여 조속히 조사하시고,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과 지도·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주의)

【일련번호 : 5】

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시 정 요 구

【제 목】 건축허가 동의 및 완공 업무 처리 부적정

【소 관 기 관】 ○○소방서(△△△△과)

【조 치 기 관】 ○○소방서

【내 용】

1. 현황(업무개요)

- ○○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·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허가 동의, 소방시설공사 착공 및 감리지정 신고, 소방시설 완공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,
- 「소방시설법 시행령」에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은 스프링클러설비, 공기호흡기, 제연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- 그런데, ○○소방서 종합감사(2018. 3. 19. ~ 3. 23.)에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(□□□□ 영화관)에 스프링클러설비, 공기호흡기, 제연설비가 설계·시공되어 있지 않음에도 건축허가 동의 및 소방시설 등 완공필증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.

2. 관계법령

- 「소방시설법」 제7조(건축허가등의 동의)제1항에 건축물 등의 신축·증축·개축·재축(再築)·이전·용도변경 또는 대수선(大修繕)의 허가·협의 및 사용승인 등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(施工地)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,
-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구받으면 그 건축물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하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에 동의요구서 및 첨부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4일 이내의 기간을

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
- 같은 법 제9조(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·관리 등) 제1항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·관리하여야 하고,
- 「소방시설법 시행령」 제15조 별표4(수용인원의 산정 방법) 및 별표5(특정소방대상물에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)에 문화 및 집회시설의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.6㎡로 나누어 얻은 수(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의자를 설치한 부분은 그 부분의 의자 수로 하고, 긴 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너비를 0.45m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)로 산정하여 수용인원 100인 이상은 스프링클러설비, 공기호흡기, 제연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3. 위법부당사항

- 그런데도, ○○소방서 △△△△과에서는 위 문화집회시설 □□□□ 영화관의 건축허가 동의 설계도서 상에 다중이용업 관련 시설인 자동화재탐지설비, 간이스프링클러 등만 설계되어 있고,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(관람석 좌석수 99석, 상영관 외 용도의 바닥면적 $101.35/4.6 = 22.03$)임에도 수용인원을 100인 이하(좌석 99석만 산정)로 산정하여 스프링클러설비, 공기호흡기,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이 설계되어 있지 않음에도 보완요구 없이 건축허가 동의를 한 사실이 있고,
 - 실제 특정소방대상물(작은 영화관)에 스프링클러설비, 공기호흡기, 제연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에도 건축물 사용승인 동의(소방시설 등 완공필증 교부)한 사실이 있다.

조치할 사항

- ① 건축허가 동의 및 완공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○○소방서 지방소방교 □□□ 및 실무책임자 지방소방경 □□□에게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9조에 의거 『**경징계**』 하고, 책임감독자 지방소방령 □□□에게 「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에 의거 『**경고**』 조치하시기 바라며,(중징계, 경고)
- ② 스프링클러설비, 공기호흡기,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□□ 영화관 건축물에

는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**시정조치** 하고,(시정)

- ③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11조에 따라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계하지 않은 소방시설 설계업자에게 사법조치 및 영업정지 등 **행정처분** 하시기 바랍니다.(시정)

【일련번호 : 6】

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경 고 · 주 의 요 구

【제 목】 소방시설 등 조치명령 이행여부 확인 소출

【소 관 기 관】 ○○소방서(△△△△과)

【조 치 기 관】 ○○소방서

【내 용】

1. 현황(업무개요)

- ○○소방서 △△△△과에서는 2015. 5월부터 2018. 3월까지 소방시설 등 조치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아래 표와 같이 이행여부 확인 기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.

2. 관계법령

- 「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」 제12조(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) 제1항에 소방특별조사(자체점검) 결과가 「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한 경우에는 조치명령 기간 만료 후 7일(2016. 1. 21. 이후 10일)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3. 위법부당사항

- 그런데도, ○○소방서 △△△△과에서는 소방시설 등 조치명령 업무를 처리하면서 ○○군 청소년수련시설 등 13개소에 대한 조치명령 이행여부 확인을 위 현황과 같이 초과(1~6일)하여 확인하는 등 소방시설 등 조치명령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조치할 사항

- ① 소방시설 등 조치명령 이행여부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○○소방서

지방소방교 □□□ 및 실무책임자 지방소방경 □□□에게 「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에 의거 『**경고**』 조치하시기 바라며,(경고)

- ②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과 지도 ·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주의)

【일련번호 : 7】

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경 고 · 주 의 요 구

【제 목】 대형화재취약대상 간부책임담당제 업무추진 소홀

【소 관 기 관】 ○○소방서(♣♣♣♣단)

【조 치 기 관】 ○○소방서

【내 용】

1. 현황(업무개요)

- ○○소방서 △△△△과에서는 2015. 5월부터 2018. 3월까지 대형화재취약대상에 간부책임담당제를 운영하면서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2. 관계법령

- ○○소방서에서는 대형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매년 대형화재취약대상 간부 책임담당제를 운영하면서,
 - 위 “간부책임담당제 지정 현황”과 같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월 1회(2016년 동절기(11월~2월) 월 2회) 이상, 현지방문 지도를 하고 점검결과를 전자문서로 결재를 받도록 하였다.

3. 위법부당사항

- 그런데도 ○○소방서에서 △△△△과 예방지도담당 지방소방경 ●●● 등 9명은 3년간 34회 지도점검을 미실시 하였으며, 동절기 월 2회 실시기준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조치할 사항

- 대형화재취약대상 간부책임담당제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○○소방서 지방소방경 ●●●에게 「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에 따라 『**경고**』, 지방소방경 ☆☆☆, ○○○에게 「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에 의거

『**주의**』 조치 하시기 바라며,(경고, 주의)

- △△△△과에서는 업무추진 이행실태 확인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직원에 대한 교육과 지도·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주의)

【일련번호 :8】

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시 정 요 구

【제 목】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소홀

【소 관 기 관】 ○○소방서(△△△△과)

【조 치 기 관】 ○○소방서

【내 용】

1. 현황(업무개요)

- ○○소방서 △△△△과에서는 2015. 5월부터 2018. 3월까지 관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2. 관계법령

-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하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[별표4] 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·관리하여야 하며,
- 같은 법 제20조(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)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,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·관리, 소방훈련 및 교육,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·관리, 화기(火氣) 취급의 감독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3. 위법부당사항

- 그런데도, ○○소방서 종합감사 기간(2018. 03. 19. ~ 23.) 동안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,
 - ★ ★★영농조합법인 등 5개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등이 “소방

시설 등 유지·관리 부적정 명세”와 같이 수신기 회로 단선 및 예비전원 불량, 옥내소화전설비 송수구 위치 부적정, 감지기 미 설치, 피난방화시설 훼손(도어체크 탈락), 유도등 점등 불량, 등 소방시설의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지적된 사실이 있다.

조치할 사항

- ① 이 건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들의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대한 지식과 안전의식 부족으로 소방시설 유지·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사료되며, 관계 공무원들의 관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,
- ② 위 □ □ □ 영농조합법인 등 5개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각각 **조치명령, 과태료 처분** 등 관련법령에 따라 **시정** 조치하시기 바라며,(시정)
- ③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·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【일련번호 : 9】

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주 의 요 구

【제 목】 위험물제조소 등 안전관리 소홀

【소 관 기 관】 ○○소방서(△△△△과)

【조 치 기 관】 ○○소방서

【내 용】

1. 현황(업무개요)

- ○○소방서 △△△△과에서는 2015. 5월부터 2018. 3월까지 위험물제조소 등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2. 관계법령

-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제5조(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) 및 제14조(위험물시설의 유지·관리)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위치·구조 및 설비가 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8조에서 제43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- 같은 법 제6조(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)에는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제조소등의 위치·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소등의 위치·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 또는 변경허가 신청하여야 한다.
-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(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) 및 제37조(주유취급소의 기준)에 따라 주유취급소에는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 외에는 다른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, 이와 관련되어 바닥면적이 4m² 이상인 공작물을 신설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.
- 「제조소등의 휴지(休止)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(2005.8.1.)」에는 휴지 제조소등

에 대한 의무유예 등 행정사항 중 관계인이 안전조치 및 관리를 하지 않는 상태로 휴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화재예방 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을 용도폐지토록 지도하거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정지·허가취소 절차를 진행토록 하고 있다.

3. 위법부당사항

- 그런데도, ○○소방서 종합감사 기간(2018. 03. 19 ~ 23)중 위 “위험물제조소 등 점검 현황”과 같이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,
 - ●●주유소, ●●주유소 등 3개의 주유취급소에 대해 현장 점검결과 부지 내 구조물(13㎡, 5.5m×2.4m), 차고지(68㎡, 13m×5.3m)을 설치하거나, 방화담(6m)이 소실된 상태로 유지·관리를 소홀히 하여 지적된 사실이 있다.

조치할 사항

- ① 이 건은 위험물시설 관계자들의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에 대한 지식과 안전의식 부족으로 변경허가 없이 훼손 등 위험물시설 유지·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관계 공무원들의 관내 위험물 시설의 관리 감독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,

위 ●●주유소, ●●주유소에 대하여 **사법조치** 및 **조치명령** 등을, ☆☆주유소에 대하여 **시정명령**, ●●●목욕탕, ○○군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 대하여는 휴지 종료 시 대상의 위험물제조소 등이 용도폐지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(지도)하시고,(주의)
- ②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법령 및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과 지도·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주의)

【일련번호 : 10】

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주 의 요 구

【제 목】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부적정

【소 관 기 관】 ○○소방서(△△△△과)

【조 치 기 관】 ○○소방서

【내 용】

1. 현황(업무개요)

- ○○소방서 △△△△과에서는 2015. 5월부터 2018. 3월까지 소방대상물의 현장방염 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를 실시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2. 관계법령

-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(소방대상물의 방염 등) 및 제13조(방염성능의 검사)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의 설치하여야 하며,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(시·도 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)에 방염대상물품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·목재는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.
- 「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(방염성능검사 신청)에 따라 방염 성능검사 신청된 현장처리물품(목재 및 합판) 시험체는 「방염성능기준」 제7조의2(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)에 따라 시험체를 항온건조기(40 ± 2℃) 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 안에 2시간 동안 넣어 건조하여 연소시험장치를 이용하여 성능시험 측정하여야 한다.

3. 위법부당사항

- 그런데도, ○○소방서 △△△△과에서는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측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●●●●진흥회관 현장처리물품 시험체를 방염성능측정 기준에 따른 건조시간(최소 26시간)을 준수하지(약 25.5시간) 않은 상태로 방염성능검사 성적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.

조치할 사항

- ①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○○소방서 지방소방교 ★★★에게 「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에 따라 『**경고**』 조치하시기 바라며,(경고)
- ②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법령 및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과 지도 ·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주의)